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227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혜진, 김윤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정영석, 진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14.자 1,850,000원 송금행위, 2021. 5. 18.자 9,200,000원 송금행위,

2021. 5. 28.자 8,950,000원 송금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8.경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773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9. “C는 원고에게 119,050,36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피고에게 2021. 5. 14. 1,850,000원, 2021. 5. 18. 9,200,000원, 2021. 5. 28. 8,9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는 2021. 6. 14.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5323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채권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C는 2022. 1.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2. 4. 25.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22.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송금행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회생사건 관리인을 대위하여 위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C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2022. 1.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도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는 2022. 4. 25. 제기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회생 관리인이 C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C의 채권자로서 관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역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0. 1.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생재단에 관하여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재단에 관하여 관리인(내지 채무자)에 속하는 부인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한 바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인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라.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